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한 등〉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30호)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61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한 등	4

I. 제안경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2630호)

가. 발 의 자 : 안철수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4. 8. 8.

다. 회 부 일 : 2024. 8. 9.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2761호)

가.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8. 13.

다.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2630호)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외국 주요 입법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독성 있는 콘텐츠

츠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도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음.

이에 법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원칙적으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하 “정보추천 알고리즘”이라 함)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되, 친권자 등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이 경우에도 자정부터 오전 6시 이전 사이의 시간대에 대하여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함에 있어서 보호자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제42조의4 신설 등).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2761호)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연령대 중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미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제한을 하고 있음. 이처럼 청소년의 정신건강

을 위한 보호 및 규제가 국제적으로 진행되자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한 등

가. 개정안 요지

구분	안철수의원안	조정훈의원안
정의	- 사회관계망서비스 - 알고리즘	- 사회관계망서비스
방통위 시책	-	- 사회관계망서비스 과도한 이용 관련 청소년 보호 시책 마련
의무 대상 사업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¹⁾ 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
사업자 의무의 내용	- <u>19세 미만</u> 청소년에 대한 <u>정보 추천 알고리즘 금지</u> ※ 보호자 동의 시 허용 가능 (0시~6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동의 필요)	- <u>16세 미만</u> 청소년의 친권자등 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 ①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u>일별 이용 한도</u> ② <u>정보추천 알고리즘 허용여부</u>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몰입 예방 관련 사항
과태료	- 보호자 동의 없이 정보추천 알고리즘 허용: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 하거나 확인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안철수의원안	조정훈의원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소통하면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소통등의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u><신설></u>	15.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연산·논리·규칙 및 과정을 말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현행	안철수의원안	조정훈의원안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u>청소년유해정보</u>”라 한다)<u>로부터</u>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42조의4(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 ①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u>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u>”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	등) ① ----- ----- ----- ----- ----- ----<u>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부터</u>-----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4(청소년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과몰입 예방) ①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제공자는 그 이용자 또는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u>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u> 1. 해당 청소년의 사

현행	안철수의원안	조정훈의원안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하 “정보추천 알고리즘”이라 한다)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u>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추천 알고리즘의 허용 여부를 위하여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u> 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회관계망서비스 일별 이용 한도 설정</u> 2. <u>사회관계망서비스 내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u> 3. <u>그 밖에 사회관계망서비스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u>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친권자등의 확인을 얻기 위하여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u>

현행	안철수의원안	조정훈의원안
	<u>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정보추천 알고리즘의 허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u> <u>④ 제2항에 따른 연령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친권자등의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연령 확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	③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제42조의4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3의2.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친권자등의 확인을

현행	안철수의원안	조정훈의원안
<신설> 4. ~ 25. (생략) ④ (생략)	없이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정 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한 자 3의3. 제42조의4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 이 청소년에게 자 정부터 오전 6시까 지 정보추천 알고 리즘을 허용한 자 4.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관계망서비스 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회관 계망서비스를 제공받 고 있는 청소년에 대 하여도 적용한다.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된 내용과 다 르게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를 제공한 자 4.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 검토사항

-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등에 따라 청소년의 대다수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대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78.1%에 달하여 2019년 대비 13.4%p 증가함²⁾.
- 그런데 최근 알고리즘에 기반한 SNS가 과의존을 유발하는 등 청소년의 인지 및 정서 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2배 높아짐³⁾.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청소년(만 10~19세)이 47.7%로 다른 세대(성인 31.6%, 아동 20.4%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⁴⁾.
 - 2024년 1월 미국 연방 상원에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 착취’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는 SNS가 아동 보호를 위한 책임

2)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p.102

3) 한국일보, ‘미국 공중보건당국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치명적 위험”’, 2023.5.24.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65.

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하였음.

- 또한 유럽연합은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플랫폼이 아동의 행동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2024년 5월부터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이에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 관련 알고리즘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 제정·추진 중인 상태임.

- 2024년 7월 미국 상원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비슷한 콘텐츠를 자동재생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을 통과시켰음⁵⁾.
- 또한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를 금지하고, 14세에서 15세 사이 아동의 경우 SNS에 가입하려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⁶⁾, 미국 뉴욕주는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⁷⁾하는 등 미국 23개 주에서 아동 SNS 제한 관련 법률이 통과됨.
- 그 밖에 호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청소년의 SNS 제한 또는 금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임⁸⁾.

5) 한국일보, “SNS, 유해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강력 규제법, 미 상원 통과는 했지만...’, 2024.8.1.

6) 연합뉴스, ‘美플로리다주, 내년부터 14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 2024.3.26.

7) 한국경제, “알고리즘 거부권 보장하라”...‘디지털 감옥’ 탈출구 찾는 지구촌’, 2024.8.4.

- 이러한 최근의 추세 및 세계적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기반 추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SNS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정의

- 두 개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소통등의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통신망의 이용 자체가 정보의 송·수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⁹⁾, 개정안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정보통신서비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수익적 성격의 규정에 비해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므로¹⁰⁾,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세계일보, “‘청소년에 해로워’... ‘미성년 SNS 금지’ 규제의 칼 뽑았다”, 2024.7.27.

9)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0) 현재 1992. 2. 25. 89헌가104

□ 의무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의 범위

- 안철수의원안은 개정안에 따른 의무자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¹¹⁾’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조정훈의원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모든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를 의무자로 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른 사회관계망서비스가 매우 광범위하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의 의무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철수의원안과 같이 의무자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한

- 알고리즘 또는 콘텐츠의 실질적 유해성과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청소년의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1)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 알고리즘 기반 정보통신서비스가 이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콘텐츠만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서비스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될 우려가 있기는 하나,
알고리즘은 콘텐츠 추천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호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의 유사성, 다른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 빈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수 있고, 이 중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요소도 존재함.
- 따라서 알고리즘 또는 이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내용과 무관하게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콘텐츠 일체가 이용자, 특히 청소년에게 과의존 등 병적인 상태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제공은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나 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경우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자체의 유해성 여부 및 청소년에 대한 제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유해콘텐츠의 범위 확대 및 규제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청소년의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일체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①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시간순 콘텐츠에 비해 중독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알고리즘을 통해 오히려 청소년이 민감하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③ 사업자들이 각자 고유의 알고리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전멸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시간 제한

- 청소년의 SNS 사용시간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따른 아동의 권리 제한 사이의 비교형량이 필요해 보임.
- 청소년의 SNS 사용에는 유해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등 역기능도 있으나, 동시에 정보의 습득, 대인관계 형성 및 강화와 같은 순기능도 존재함.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SNS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64.4%), 친구 또는 타인과의 소통(58.6%), 친구들의 최신 소식

공유(43.6%), 새로운 정보나 뉴스의 획득(40.3%) 등을 SNS 이용 사유로 꼽았으며, 심층면접 결과 SNS에서 본 게시물이나 주제를 가지고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등 SNS가 오프라인의 친밀감을 높이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였음¹²⁾.

- 또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아동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기는 하나,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아동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¹³⁾에 의하여 보호됨¹⁴⁾.
- 이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의 SNS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대신,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¹⁵⁾,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¹⁶⁾, 불법정보 유통방지¹⁷⁾ 등 SNS 사용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12)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p.105-106.

13)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4)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15)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6)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조정훈의원안은 친권자등이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친권자등의 의사에 따라 청소년의 SNS 이용이 전면 금지되거나 큰 폭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SNS의 순기능적 측면,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유해콘텐츠 범위 확대 및 규제 강화, SNS 중독·과몰입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아동의 권리를 보다 적게 침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정의가 광범위하여 사실상 모든 정보통신서비스가 이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다는 의견을 제출함.

□ 기타 검토사항 및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 조정훈의원안은 청소년의 SNS 이용 한도 등에 대해 ‘친권자등’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친권자등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친권자등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14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1798호, 윤건영의원 대표발의)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알고리즘 기반 중독성 콘텐츠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1816호,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법안 심사 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청소년이 중독성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연령 확인, 청소년에 대한 정보추천 알고리즘의 제한, 친권자등의 동의 등의 조치를 수용하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정의가 광범위하여 일반 이메일, 카페, 블로그 등의 가입과 이용에도 관련 규제가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용어를 제한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① 연령확인 및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② 포괄적인
입법 규제보다는 가이드라인 등 자율규제를 통해 사적 질서 형성
을 우선시하는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①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름, 나이, 친권자
정보 등을 모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반하며, 친권자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② 청소년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